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이영학**

1. 머리말
2. 지방기록관리의 중요성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5. 기록문화운동의 전개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 이 연구는 2010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글은 2010년 6월 11일 한국기록학회의 제10회 학술심포지움 '지방의 기록관리와 기록문화운동'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 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주제어 : 지방기록관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 기록문화운동

1. 머리말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는 어느 정도 정비되었지만, 지방의 기록관리나 민간영역의 기록관리는 아직도 부진하며, 더욱이 국민들에게 기록관리는 여전히 미지의 분야로 남아 있다.

특히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리는 여전히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이 독자적으로 수행된 지 16년이 지났다. 올해 2010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7월부터 제5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독자적인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록자치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완성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기록문화가 정립되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을 운영하면서 생성한 행정기록을 수집·이관·정리·분류·기술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거나, 지방의 역사기록과 문화기록을 수집·정리·분류·기술하여 지방 주민과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책임행정, 투명행정을 높이고, 나아가 지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면서 지방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¹⁾

1) 지수걸,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21

그러나 지방기록관리의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아직도 요원하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기록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은 주로 인·허가서류, 공무원 발령대장 및 인사기록카드 등 증빙적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당시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자료관을 설립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2007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6개 광역시·도 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하였지만²⁾ 현재까지 실행된 지역은 없다.

이 글에서는 지방기록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왜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지방기록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팀의 신설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록문화운동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방기록관리의 중요성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즉 공공기록이 제대로 생산되지도, 관리되지도, 공개되지도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부칙 제3조

중요기록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현재 부실하게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이나 국무회의 회의록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어왔다. 1948년부터 1997년까지 50년 동안의 대통령 기록이 약 20만건밖에 전해지고 있지 않다.³⁾ 또한 국무회의 회의록의 내용은 간략하여 당시의 논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도 충실하게 관리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지방기록물은 부실하게 남아 있어서 지방의 정책 및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서 고는 시설이 미비하고 조직과 인력도 부족하여 지방기록물을 보존·관리할 수 없었으며, 기록물의 공개를 통한 활용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면, 경기도청의 경우 1970년에 문서고가 설치되면서 기록물관리를 시작하였다. 현재 경기도청 기록관에는 1960년대 이전의 기록물이 2천 5백여권, 1970년대는 4천여권, 1980년대는 1만 5천권 정도 관리되고 있다. 그 기록들은 대부분 인·허가서류, 공무원 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및 재산 관련사항 등 증빙적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하여 당시 지방행정시책 및 지방 사정을 파악할 수가 없다.⁴⁾

2000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준영구와 영구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 보존하지 못하였고, 총무처(행정안전부의 전신) 산하의 정부기록보존소(국가기록원의 전신)로 이관해야 했다.

3) 이영학, 2009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 『역사문화연구』 33,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노무현대통령은 5년 임기(2003~2008) 동안에 약 800만건(그 중 웹기록이 500만건)의 기록을 남겼다]

4) 박준배, 2008 「경기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방안 연구」 『지방기록물관리 기관 설치 방안과 향후과제』 국가기록원 제4회 기록관리포럼, 36~37쪽 (원래 영구 및 준영구기록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광역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

2000년 12월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영구문서는 총 21만권에 달한다. 이 문서들을 성격별로 분류해보면 법규성문서, 증빙성문서, 정책성문서, 기타 4종류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그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인사기록, 징계기록, 농지 분배 및 상환 등의 재산관계 증빙류 등의 증빙성문서이고(전라북도의 사례, 약 7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을 알 수 있는 정책성문서는 매우 적다.⁵⁾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리 관행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법률에서 회의록 등 기록물의 생산을 의무화하고, 기록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기록의 무단 파기 및 은닉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를 이룰 수 있다.⁶⁾ 지방 공무원의 업무 경험과 사업 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기억으로 끝날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거나 후손에게 전승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들이 그것을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행정의 효율은 높아질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수행하는 경영수익사업 등은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민 전체의 것

5) 이진영, 2001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지방기록물의 현황과 성격--전라북도 영구문서를 중심으로」 『기록보존』 14, 정부기록보존소

6) 지수걸, 2002 「지방자치와 지방기록관리」 제2회 기록학 심포지움

이 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행정과정에서 생산 지식이나 정보는 관련 공무원등의 사적인 ‘경험’이나 ‘기억’이 아니라 당연히 공식적인 ‘기록물’로 남겨져야 한다”⁷⁾고 하였다. 그를 통하여 그 경험이 공유되고 평가되어 행정의 효율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원제도’, ‘회계감사제도’, ‘주민 및 납세자 소송제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등의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책임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업무의 기획단계부터 업무의 종결단계까지 업무의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업무 기록이 생산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담당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일부의 집단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증거할 수 있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특정 이해집단이 폐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문제와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행정절차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때, 특정 이해집단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주민들이 공개된 행정기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하게 되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즉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에서도 거버넌스가 실현되는 것이다.

지방기록관리의 체계화는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책임성, 행

7) 위 논문 29쪽

정의 투명성의 제고뿐 아니라 지방의 특성과 역사문화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지방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이나 역사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연구자와 주민들에게 제공될 때 지방의 정체성이 제고되고, 주민들은 자기 고장을 이해함으로써 애향심이 고취될 것이다. 즉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이 설립되어 지방의 행정기록뿐 아니라, 지방의 역사기록 및 문화기록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지방민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자기 지역의 유의미한 지식과 정보를 자기 지역내의 전문가나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⁸⁾

또한 복잡 다단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시청 기록관의 기록연구사는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市)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다. 시청 기록관에 있는 기록을 활용하여 지방의 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이나 지역축제 등을 기획하고, 그에 맞는 홍보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의 경우 시청 기록관에서 기록관 자료를 활용하여 시 축제를 기획하고 도시의 특성을 잘 드러내어 다른 도시 혹은 나라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⁹⁾ 이러한 사례는 시청 기록관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8) 지수걸,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21, 한국기록학회

9) Peter Blum, 2010 「독일 하이델베르크 아카이브즈 사례: 기록을 통한 하이델베르크 시민의 정체성 형성과 관광 및 문화산업 발전」 『기록관리를 통한 기업 경영과 지방행정의 발전』 한국외국어대 정보·기록관리학과 10주년기념 국제 컨퍼런스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목적과 설립 계획

지방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그 기관을 통하여 지방의 행정기록을 잘 보존 관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업무기록을 잘 보존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방의 역사기록을 수집 관리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생활 등의 제 자료들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에게 자료를 활용케함으로써 지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애향심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지방의 행정기록과 역사·문화·기록을 정리 및 공개하는 작업은 연구자와 지방주민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지방자치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거버넌스를 통한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6개 광역시·도에 기록관 설립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관 설립을 의무화하였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관 설립을 의무화 함으로써 시·군·구 --> 광역자치단체 --> 정부기록보존소의 관리체계가 시·군·구 --> 정부기록보존소의 관리체제로 변화하면서 기록관리의 중앙집중화가 심화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구의 자료관을 통합할 수가 없었다.¹⁰⁾

2007년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영구기록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현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6개 광역시·도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시·도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는데,¹¹⁾ 이후 제출한 계획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계획 비교

구분	기록물보존수요 (2006+ 향후 20년)	시설, 인력규모	소요예산 (억원)	설치시기
서울	180만권	시설: 25,200m ² (7,623평) 인력: 41명--> 59명	949	2008~2010
부산	240만권	시설: 16,851m ² (5,106평) 인력: 25명--> 36명-->58명	504	2008~2015
대구	220만권	시설: 13,224m ² (4,000평) 인력: 25명	450	2008~2012
인천	240만권	시설: 16,146m ² (4,893평) 인력: 25명--> 36명-->58명	486	2008~2015
광주	110만권	시설: 9,758m ² (2,953평) 인력: 9명--> 25명 확대	311	2008~2012
대전	90만권(시청만)	시설: 9,758m ² 인력: 34명	360	2008~2013
울산	200만권	시설: 9,758m ² (2,953평)	330	2008~2015
경기	641만권	시설: 6,456m ² (1,953평) 인력: 36명--> 57명	40~50 (기존건물 확충)	2008~2012
강원	200만권	시설: 20,721m ² (6,279평) 인력: 36명	650	2008~2015

10) 박준배, 2008 앞논문 31~33쪽

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부칙 제3조

충북	100만권	시설: 12,126m ² 인력: 24명	400	2008~2012
충남	100만권	시설: 13,910m ² 인력: 25명	500	2008~2012
전남	100만권	시설: 12,133m ² (3,674평) 인력: 34명	427	2008~2012
경북	200만권	시설: 47,672m ² 인력: 25명	480	2008~2010
경남	200만권	시설: 15,036m ² 인력: 25명 --> 36명	480	2008~2013
제주	60만권	시설: 7,800m ² 인력: 28명 --> 35명	276	2008~2010

(비고: 전북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출전: 전가회, 2010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추진현황」 『기록관리, 전문성을 말하다』 제2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그러나 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몇 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계획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려면 각 기관당 200억~95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¹²⁾ 이에 반해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곳이므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한다.¹³⁾ 즉, 중앙정부의 경제적 지원 거절, 지방자치체의 추진의지 부족, 각 기록관의 역량 미흡 등이 어우러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추진이 정체된

12) 전가회, 2010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설립 추진현황」 『기록관리, 전문성을 말하다』 제2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202쪽

13) 조이형, 2008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현황과 대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방안과 향후과제』 국가기록원 제4회 기록관리포럼

상태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의 조건 속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논의하여야 한다.¹⁴⁾ 지방공무원, 학계, 지방전문가, 지방의 기록연구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현재 기록관에 소장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바탕 위에 그 지방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지 모색하여야 한다.

설립 방식은 현재 다양한 형태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국가기록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방안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다. 당시 조이형(국가기록원 보전연구관)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광역 단위 ‘자치단체조합’을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⁵⁾ 김상호(대구대 교수)는 ‘행정효율성 증진’·‘지방기록문화발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지역 사정에 맞게 국가기록원 분관, 기록센터, 지방자치단체조합, 대학기록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⁶⁾ 박춘배(경기도청 과장)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관의 사정에 맞게 지방기록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경기도는 독립기관으로서 ‘경기도 기록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¹⁷⁾

14) 지수결,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21, 한국기록학회,

15) 조이형, 2008 위논문

16) 김상호, 2008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의의와 주요 쟁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방안과 향후과제』 국가기록원 제4회 기록관리포럼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지자체의 준영구, 영구기록물을 이관 받지 않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 늦추어진다면, 지방의 준영구, 영구기록물의 산일(散逸)이 예상된다. 그를 제대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신설이 시급하다.

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성격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어떠한 성격으로 만들 것이냐?는 그 나라의 역사적 특성과 지방의 역사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전국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28곳에 지방공문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¹⁸⁾ 그 중 22곳이 행정기록을 중심으로 보존·관리하는 문서관이고, 나머지 6곳은 고고자료, 문화재 및 역사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역사자료관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적 특성이 강하여 지방의 특색이 뚜렷하고, 1987년에 「공문서관법(公文書館法)」이 제정되면서 15곳의 공문서관이 신설되었다.¹⁹⁾

중국에서는 기록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당안국과 기록을 관리하는 당안관이 현급(縣級) 이상의 행정구역별로 1개씩 설치되었다. 국가 종합당안관이 3곳 있으며, 성(省)급 당안관으로 31곳이 존재한다.²⁰⁾ 현급 당안관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3,816개가 설

17) 박춘배, 2008 「경기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방안 연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방안과 향후과제』 국가기록원 제4회 기록관리포럼

18) 일본의 지방공문서관은 우리나라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한다.

19) 김종철, 2005 「일본의 지방공문서관과 지방기록관리--문서관과 역사자료관의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1, 한국기록학회

20) 국가 종합당안관으로 中央檔案館, 第一歷史檔案館, 第二歷史檔案館이 있으며, 省 당안관으로는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중경시 4곳, 자치구 당안관으로 5곳, 나머지는 22곳의 省級 檔案館이 있다.(국가기록원, 2005 『주요 외국의 기록관

치·운영되고 있다.²¹⁾ 중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행정구역 범위 내의 중국공산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및 검찰원, 각종 군중단체 등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기록물도 관리하고 있다.²²⁾

반면에 미국은 주(州) 정부에 레코드센터(Records Center)와 아카이브즈(Archives)가 있다. 레코드센터(Records Center)는 활용이 끝났거나 준활용 기록물 가운데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폐기하거나 아카이브즈로 이관하는 중간보존창고이다. 주(州) 아카이브즈(Archives)는 국무장관 소속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다.²³⁾

세계 각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를 살펴보자. 대체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의 행정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문서보존소가 많지만, 기록관리의 선진국이나 지방의 역사문화·기록문화적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일종의 ‘역사문화센터’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오끼나와현공문서관(沖繩縣公文書館), 교토부립(京都府立)총합자료관이나 미국의 네바다주 아카이브즈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오끼나와현공문서관(沖繩縣公文書館)은 오끼나와현의 행정기록뿐 아니라 유구(琉球)왕국의 오래된 역사문서들을 수집·정리·공개하여 다음 세대에게 문화유산으로 남겨 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시회, 강연회, 학술회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공문서 등을 조사·연구하여 현민(縣民)에게 제공하기도 한

리 현황』 424~430쪽)

21) 위책, 405쪽(중국의 縣級은 우리나라의 시(市)에 해당한다)

22) 위책, 424쪽

23) 국가기록원, 2005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현황』 72~78쪽

다.²⁴⁾

교토부립(京都府立)총합자료관은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생활 등의 모든 자료(도서, 고문서, 행정문서, 사진·근대문학자료, 미술 공예 역사 민속자료 등)를 중점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교토(京都)가 오랜 역사 도시인만큼 교토부립(京都府立)총합자료관은 문서관·도서관·박물관 등의 기능을 합친 종합적인 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다.²⁵⁾

미국의 네바다주 아카이브즈도 ‘역사문화센터’의 성격을 지향한다. 미국의 네바다주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상속문제, 사회보장문제, 재향군인에 대한 혜택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 환경오염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환경주의자 및 환경보호기관, 역사적인 유적이나 유물을 연구하려는 박물관의 큐레이터나 역사가, 부동산에 대한 기록을 보고자 하는 행정가나 부동산업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는 TV나 영화 프로듀서 등의 내방을 환영하면서”²⁶⁾ 이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수집 보존하고 그를 바탕으로 자료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다. 즉 네바다주 아카이브즈는 지방의 ‘역사문화센터’를 지향하면서 지방의 역사문화정보를 소통하고 지방민의 지식역량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행하고자 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시(市)기록관으로서 ‘역사문화센터’를 지향하는 곳도 있다. 일본 야시오시(八潮市) 자료관은 “① 야시오 시민이 모든 자료의 관찰과 활용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문화가 형성

24) 김종철, 2005 위논문 239~240쪽

25) 김종철, 2005 위논문 241~243쪽 [이외 나가노현(長野縣)현립역사관, 기후현(岐阜縣)역사자료관, 효고현공관현(兵庫縣公館縣)정자료관, 이바라키현(茨城縣)립역사관, 후쿠시마현(福島縣)역사자료관 등 5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역사자료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6) 박찬승, 2000 위논문, 118~119쪽

된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자료관, ② 지역의 고고 역사 민속 등의 자료, 행정문서, 지역 문현을 수집 정리 보관하고 시민의 문화유산 보존을 도모하는 자료관 ③ 지역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연 강좌 견학 사업과 편찬물의 간행 조사 연구를 행하는 자료관²⁷⁾을 지향하고 있다. 즉 야시오시(八潮市) 자료관은 단순한 문서관리기관을 넘어 야시오지방의 지역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및 조사·연구하고, 시민에게 자료관 소장의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야시오시의 문화향상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설치목적으로 삼고 있다.²⁸⁾

독일 하이델베르크시 기록관의 경우는 시청 기록뿐 아니라 지방의 역사기록을 수집 보존하면서, 그것을 연구자와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나아가 시청 기록관에서 문화관광 자료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하이델베르크시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하이델베르크시 기록관이 시(市)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진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²⁹⁾

처음에 우리나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행정기록을 중심으로 관리·공개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점차 지방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몇몇 지방의 경우는 ‘역사문화센터’의 기관으로 전이되어 갈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도사편

27) 박찬승, 2000 「외국의 지방기록관과 한국의 지방기록자료관 설립방향」 『기록학연구』 창간호, 한국기록학회, 128~129쪽

28) 위와 같음

29) Peter Blum, 2010 「독일 하이델베르크 아카이브즈 사례: 기록을 통한 하이델 베르크 시민의 정체성 형성과 관광 및 문화산업 발전」 『기록관리를 통한 기업경영과 지방행정의 발전』 한국외국어대 정보·기록관리학과 10주년기념 국제컨퍼런스

찬위원회, 문화재단, 문화원 등과의 역할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16개 광역시·도는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시·도사를 편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도사 편찬은 기존 시·도사를 재인용한 위에 현대시기를 추가한데 불과하다.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이 도사편찬위원회를 흡수하여 장기적 계획과 전망을 갖고 활동한다면 역사문화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본적 업무는 공공행정 업무기능의 분석과 그에 따른 기록물 가치평가와 보존기간 분류, 기록물관리 전산화, 전자기록의 평가와 관리, 검색도구의 작성, 검색을 위한 기술항목 입력, 보존환경의 자동통제, 정보공개 평가와 열람 제공 등이다.³⁰⁾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만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우리나라 839개 공공기관은 2011년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³¹⁾ 그러나 시행령의 규정이 제대로 지

30) 박춘배, 2008 앞논문 50쪽

31) < 표 > 전문요원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시한

종 앙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공공 기관	계
분부	소속	광역	기초*	기초*	광역	지역** (7만 이상)	지역** (7만 미만)		
44	283	16	112	120	16	43	137	68	839
기배치	2010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비고: * 인구 기준 / ** 학생수 기준)

(출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중앙부처의 본부에는 2005년에 기록연구사를 1명씩 배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는 2007년부터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였으며, 시·군·구 등 기초자체단체는 현재 배치가 진행 중이다.

<표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2010년 8월 31일 기준)

구 분	계	중앙		지자체			교육청		
		본부	소속	소계	광역	기초	소계	광역	지역
대상기관	775	45	290	246	16	230	194	16	178
배치기관	234	44	5	163	16	147	22	12	10
배치인원	248	49	7	169	20	149	23	13	10
배치비율	30%	98%	2%	66%	100%	64%	11%	75%	6%
채 용 중	53명	-	-	48명	2명	46명	5명	3명	2명

(출전: 국가기록원 자료)

<표 2>에서 보듯이 2010년 8월말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1명 내지 2명을 배치하였지만, 시·군·구 등 기초자체단체의 경우는 230개 기관 중 147개만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 전문요원의 채용속도가 매우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에 광역교육청은 2007년말까지, 지역교육청은 2009년 말까지 배치시한을 정하였지만, 채용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자체단체에서는 정규직 기록연구사가 아니라 계약직을 선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록관리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³²⁾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들이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가 아니다.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는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기록물 평가·폐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³³⁾

현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과 2009년에 지방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을 평가하고 심의·폐기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였다. 이 일이 계속 진행된다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 기록물 폐기 과정에서 중요 기록물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를 들면, 충청남도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2000년에 공주대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학생들이 충남도청 자료들의 폐기를 위탁받아 심의한 적이 있다. <98, 99년 충남도청 폐기대장 문서 총 27,277건>의 자료들이 모두 폐기될 예정이었는데, 기록관리학과 학생들이 심사하여 56건의 자료들을 폐기대상에서 제외하여 충남도청 자

3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정규직인 기록연구사와 계약직으로 나누어지며, 계약직은 다시 전임계약직과 비전임계약직(시간제)으로 구분되어 진다.(이영학, 200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340~343쪽)

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부칙 제5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기 이전까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칙 제5조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시기를 경과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만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료관에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³⁴⁾ 이 사실에 미루어, 자료의 폐기와 영구문서 지정 등의 전문적인 일을 할 때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중요 기록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부터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 동안 중앙부처의 기록연구사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먼저, 기록관리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었거나 개선한 것이다. 기록연구사들은 자료관 운영규정과 기록물 폐기심의회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했고, 그 과정에서 기록관리의 원칙과 기록관리에 필요한 제도들을 확립해갔다. 둘째, 기록관리의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장비를 갖추어 안전한 보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보존과 업무 및 열람을 위한 공간으로 기록관을 마련하였다. 셋째,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기록관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혔다. 일반 직원 또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넷째, 기록관리의 실무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록물 보유현황조사나 기록물 DB 구축을 실현함으로써 기록물의 유실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기록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기록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 기록물의 폐기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하게 함으로서 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막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³⁵⁾

앞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기획하게 하고, 지방기록의

34) 지수걸, 200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 『기록학연구』 3, 한국기록학회, 9쪽

35) 전수진, 200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성과와 역할」 국가기록원 제5회 기록관리포럼, 3쪽

수집 및 이관, 기록물의 현황 파악 및 정리·분류·기술 등을 행하며, 소장 기록을 공개하는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에 산재해있는 역사기록 및 민간기록을 수집하여 ‘역사기록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지방의 역사기록관 내지 지방문화관으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필요하다. 기록관리전문가들이 공공기록뿐 아니라 지방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나아가 민간의 역사기록까지 수집함으로써 지방의 종합적인 문화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그 기관이 지방문화의 산실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이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간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자가 배치되어 기록관리의 일을 수행할 때, 지방역사기록관이나 지방문화관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록문화운동의 전개

지방자치가 제대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기록자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록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과 전담기구의 설립 및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의 배치가 해결되어야 한다.

1999년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지자체에서 지방기록관의 설립을 권장하고 기초자치체의 자료

관 설립을 의무화하였고, 다시 2007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자치단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의무화하였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거부로 설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기록관리의 체계화를 추진해 온 일은 의미가 있지만, 중앙집중적 기록관리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한 탓에 자율의 측면은 축소되고, 법률에 의한 준수의 요구로 지방기록관리를 해결하려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다. 즉,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부가 기록관리정책을 추진해오면서 너무 법률적 측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다.³⁶⁾

현재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와 전담기구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인식과 추진 의지 부족, 중앙정부의 지속적 독려와 예산 지원의 결여, 각 기록관의 역량과 역할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전과는 달리 주변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2007년 이래 16개 광역시·도에는 1명씩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었으며, ‘기록관’이라는 명칭으로 시설을 정비해가고 있다.

아울러 기록관리학의 전문연구자들이 학회와 대학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교육을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인력도 대거 배출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국제적인 수준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 전에 없이 높아진 상태이다.³⁷⁾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를

36) 이원규, 2010 「지방 공공기록관리의 정책과제」 『지방의 기록관리와 기록문화운동』 제10회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움

37) 이원규, 2010 위논문 참조

높이고 공무원들의 인식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와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기록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방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기록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행해야 한다. 해당지역의 자치단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향토문화단체, 관련전문가, 향토사학자 등이 높은 정치사회의식을 가지고 지방기록관리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면 지방의 기록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방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무원들이 아직은 지방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귀찮은 업무가 추가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지금 까지 지방행정업무를 잘 해왔는데, 갑자기 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며 기록물폐기대장을 만들고, 보존연한을 다시 설정하는 등의 부가적인 일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부가되었다고 여긴다.

지방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방의 문화적 특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의 역사성을 깊이하는 것이며, 그를 바탕으로 지방의 업무와 사업이 특성을 지닐 수 있으며 독창성을 지닐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지수결은 지방의 기록문화유산을 제고시키는 지방기록문화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첫째,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록물을 제대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게 만드는 운동, 둘째,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해당지역의 모든 기록물을 수집·정리하여 역사적 말하기와 글쓰기를 장려하는 운동, 셋째, 이같은 역사적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달성하려는 운동을 벌이자”³⁸⁾

38) 지수결, 200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 『기록학연구』 3, 한국기록학회, 27쪽

고 제안한다.

이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료사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동시에 단체장 산하에 ‘지방기록문화창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스스로 참여하여 지방기록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방의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향토문화단체, 관련전문가, 향토사학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산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2000년 전반기에 설립하였던 충남·대전기록관리포럼이나 경기기록문화포럼의 활동을 평가·반성하면서 그러한 활동을 확산시켜가야 하지 않을까?

6. 맺음말

지금까지 지방기록관리를 제대로 정립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지방의 기록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지방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책임성,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고, 지방의 기록을 통한 지방 행정의 경험을 공유한 시민들이 행정 참여에 가세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지방기록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의 재정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지

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다면 지방의 행정기록뿐 아니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는 민간기록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역사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시민이나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과 활성화는 공무원의 공적업무를 적극적으로 보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역사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지방문화센터’의 기능을 심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2005년에 중앙부처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은 기록물 보유현황조사와 기록물의 DB구축, 기록관리에 관련된 운영규정 제정과 개선, 기록관리의 인프라 구축, 기록관리 교육을 통한 기록관리 중요성 제고 등의 기초적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현재는 지방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지방기록물의 평가 폐기를 위해서 배치하였지만, 보존연한의 설정, 공개 여부 등 기록관리의 고유업무를 확대시켜가야 하며 나아가 행정기록뿐 아니라 역사기록의 수집 및 정리를 통한 공개를 행할 수 있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의 구상도 필요하다.

지방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기록문화운동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지방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기록을 수집·정리·분류·공개함으로써 지역의 주민이나 연구자 및 관련 인사들이 지방의 정보를 공유한다면 지방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방자치와 거버넌스가 결합되면서 이상적인 지방행정의 형태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리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향토문화단체, 관련전문가, 향토사학자 등이 높은 정치사회의식을 가지고 지방 기록관리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면 지방의 기록문화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한국외국어대, 2010 『기록관리를 통한 기업경영과 지방행정의 발전』 한국외국어대 정보·기록관리학과 10주년기념 국제 컨퍼런스
- 이영학외, 2010 『지방의 기록관리와 기록문화운동』 제10회 한국기록학회 심포지움
- 지수걸,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21, 한국기록학회
- 조이형외, 2008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방안과 향후과제』 국가기록원 제4회 기록관리포럼
- 트라이튼테크·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7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지원연구』 국가기록원 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지방기록관리혁신 연구』 국가기록원 보고서
- 국가기록원, 2005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현황』 국가기록원 제도혁신팀
- 김종철, 2005 「일본의 지방공문서관과 지방기록관리--문서관과 역사자료관의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1, 한국기록학회
- 이영학, 200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현황과 과제」 『경기 기록문화와 기록자료관의 설립방향』 경기기록문화포럼 제2회 학술심포지움
- 이영학외, 2003 『경기지역 기록문화의 현황과 과제』 경기기록문화포럼 창립 심포지엄

- 허홍범, 2003 「지역사연구와 지방지 편찬--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8
- 유재춘, 2003 「지역사 자료의 수집·정리 실태와 개선방안--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8
- 경기도, 2003 『기록문화 발전의 비전과 전략』 경기도청
- 홍성덕, 2003 「지방분권(자치)시대의 지방기록보존소」 『지방분권과 기록자치』 학술심포지움
- , 200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과 지역연구」 『우리문화 연구』 3집
- 이경용, 2002 『한국의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사 연구-1894~1969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선빈, 2002 「지역사 자료의 조사·수집현황과 지방기록 관리」 『대전·충남지역 기록문화의 현황과 과제』 대전·충남 지역 기록문화 발전의 위한 포럼 창립토론회 발표문
- 이진영, 2001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지방기록물의 현황과 성격- 전라북도 영구문서를 중심으로」 『기록보존』 14
- 곽건홍, 2001 「대통령기록 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 『기록학 연구』 4, 한국기록학회
- 시귀선, 2001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전의 기록물 평가」 『제1회 기록물 평가분류워크샵 자료집』 정부기록보존소
- 지수결, 200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 『기록학 연구』 3, 한국기록학회
- , 2000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자료관 설치 촉진 방안」 『국가기록관리의 발전방향』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정치학회
- 지수결, 1999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과 지방기록물관리운동」 『충남지역의 지방기록물 관리현황과 과제』 공주대

- 학교 대학원·한국국가기록연구원 주최 심포지움
- 이영남, 2001 「지방기록보존소와 자료관의 모델」 광주·전남 문
화정책개발센터 제3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 , 2000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 『기록보
존』 13, 정부기록보존소
- , 2000 「경기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방안에 대해」 경
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학술회의 발표자료
- 김희태, 2000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용방안-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월례발표문, 2000년 5월
- 박지태, 2000 「자료관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보존』 13,
정부기록보존소
- 박찬승, 2000 「외국의 지방기록관과 한국의 지방기록자료관 설
립방향」 『기록학연구』 창간호, 한국기록학회
- , 1999 「지방기록자료관의 설립방향」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조동걸, 2000 「근현대 지방사료 수집의 현황과 과제」 『근현대
사 지방사료 수집·정리의 방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
사위원회 심포지움
- 이해준, 1999 「충남지역의 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및 운영방
안」 『충남지역의 지방기록물 관리현황과 과제』 공주대
학교 대학원·한국국가기록연구원 주최 심포지움
- 김용래, 1989 「국가기록물 수집, 보존의 실상과 발전방향」 『기
록보존』 3, 정부기록보존소
- 이택준, 1972 「지방행정자료의 수집 및 정리」 『도서관』 26-12

ABSTRACT

Records Culture and Local autonomy

Lee, Young-Hak

This document illustrates the culture of archives should be improved to get better in local autonomy. In 1994, the municipal elections were held to perform autonomous activities in Korea. It has been sixteen years, since the first municipal election had been held. The local autonomy can be accomplished well, based on the economic independe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growing awareness of locals. Not only that, if local records were well archived and suitably used, autonomy could be more active.

However, since the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records of the self-government has not been archived well. Not only archives of local government have not been established, but also organization, budget and professional staff have not been arranged well. This brought about local records administration's inactive performance. As a result, numerous number of meaningful records are lost and people are difficult to make out the local administration policy.

If the records of local government preserved well, administrative efficiency, responsibility, transparency can be realized in better way. When local officials' work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were on record and referred to a successor of officials properly, administrative efficiency would be highly promoted. In addition, with the well-preserved work records, people are able to see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A local autonomous entity might be able to obtain

administrative transparency by showing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results to locals to the public.

In this manner, the premise to archive the records of local autonomous entity is to establish a department which can archive local records and the disposition of professional archivists. According to “the law on public archives management”, the governor of a province should discuss with a minister of administration to set up plans for archive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n this way, local archives administration would work well, when not only the department of local records administration is established, but also the department of local archives places local records under their control at the same time.

Moreover, based on active records movement, municipal officials and locals w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local record and examine local records administration systems. Not only that, when local records are shown to public and utilized properly, the local autonomy would improve a lot.

Key words: Local records management, Archives of local government,
The professional staff on local archives, The records movement